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207)

◇ 제정 이유

최근 대구 서문시장(2016년) 및 어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,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2017년부터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설치하고 있던 ‘화재알림시설’이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전부 개정(공포 '22.11.29., 시행 '22.12.1)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종류에 ‘화재알림설비’로 추가(시행 '23.12.1)됨에 따라 그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신종 소방시설로서 구성되는 소방용품의 용어 정의를 마련함
- 나. 신호전송방식(유선, 무선, 유·무선)에 대한 기준을 정함
- 다. 소방용품(화재알림형 수신기, 화재알림형 중계기, 화재알림형 감지기,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)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대한 기준을 정함
- 라. 비화재보방지를 위하여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에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
- 마. 관계인이 선택적으로 원격감시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한하여 원격감시서버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